

#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문 (학생 및 학과 공지용)

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### [대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안내]

☎ 학생담당자 한지유 850-5614 (hnh@daegu.ac.kr)

☎ 기관담당자 최영서 850-5618 (yooung06@daegu.ac.kr)

※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 하기 바랍니다.

## 1 현장실습 개요

### 1. 신청유형 및 신청 방법

가. 신청유형

1) 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1]

학과(교수)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※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[Type1]으로만 신청 가능함.

2)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2]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 기관에 지원.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나. 신청기간

1)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: 2024. 07. 15.(월) ~ 2024. 08. 30.(금) 까지

다. 신청방법: 올인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 입사 지원을 완료 후 최종합격 시 학생 포털시스템 접속 후 실습 참가 신청

### 2.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

\*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. (복수전공, 부전공인정불가)

실습신청 교과목	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			실습요건 *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.
국내현장실습(4)	국내현장실습(4)	일반선택	12	16주 이상 (640시간이상)
국내현장실습(5)	국내현장실습(5)	일반선택	18	20주 이상 (800시간이상)
국내현장실습(6)	전공현장실습(1)	전공선택	3	16주 이상 (640시간이상)
	전공현장실습(2)	전공선택	3	
	전공현장실습(3)	전공선택	3	
	국내현장실습(6)	일반선택	3	
국내현장실습(6)	전공현장실습(1)	전공선택	3	20주 이상 (800시간이상)
	전공현장실습(2)	전공선택	3	
	전공현장실습(3)	전공선택	3	
	전공현장실습(4)	전공선택	3	
	국내현장실습(6)	일반선택	3	

\* 국내현장실습(6)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함.  
실습시작 전까지 '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'와 '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'를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.

### 3. 실습기간

- 가.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(640시간) 및 20주(800시간)의 실습이 가능
- 나. 실습시작일은 해당학기 (2024-2학기) 개강일부터 가능

실습기간	시작일	종료일	비고
16주(640시간이상)	2024.09.02.(월)	2024.12.22(일)	·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
20주(800시간이상)	2024.09.02.(월)	2025.01.19(일)	·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

※ 유의사항  
**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사일정으로 인해 16주 현장실습만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. (20주 참여 불가)**  
 (\* 실습기간 설정시 **[별첨1]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참조 바람**)

### 4. 신청자격

- 가. 5개 학기 이상 실습 가능 (\*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)
- 나.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과 등록금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.

### 5. 참여 기업(기관) 자격

- 가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(출연)기관
  - 나.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
  - 다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  - 라.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- 마.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업(기관)
  - 바.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(2024년 최저임금기준 75%)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(기관)
- 사.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호)  
**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.**

※ 참여제외 기업(기관)

- 1) 텔레마케팅,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, 경비, 건물관리, 주차관리, 목욕탕관리, 주유, 청소용역,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
- 2)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 판매업체,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
- 3) 소비.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, 인력공급업체 (용업업체 포함)
- 4)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5)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

### 6. 학과(교수) 협조 요청사항

- 가. 현장실습 기관의 발굴,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
- 나.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, 점검 및 지도평가
- 다.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 신청에 대한 실습지도 교수 승인
- 라. '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'의 경우 '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'와 '실습기관운영계획서'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청

### 7. 대학 현장실습생 지원사항

- 가.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
  - 직장에질 교육 및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정
- 나.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실시
- 다. 현장실습생 학점 인정

### 8.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지원 요청 사항

- 가. **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(미가입시, 현장실습 진행 불가)** [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, 2018.09.11.]
- 나. 실습지원비 지급 (직무교육 배정 시간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 지급)
  -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: 최저임금(월 환산액 기준) 75% 이상 지급
  -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: 최저임금(월 환산액 기준) 50% 이상 지급

### 9. 기관 지원 사항

- 가. 실습 기관 지원금
-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,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100%인 경우, 대학에서 실습 기관 예게 최저임금의 25% 지원
  - (※ 단, 실습 종료 후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, 급여명세서 혹은 이체 확인증 및 기관(명)으로 된 통장 사본, 각 1부씩 제출 요망)

### 10. 유의사항

- 가. 8학기 재학생의 경우 (※2025년 2월 졸업 예정자) 16주 현장실습만 신청가능하며,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.
- 나. 현장실습 (국내, 해외)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,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다.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 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 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이외의 오프라인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처리 됨.
  - (※ 단,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+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)
- 라.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
- 마. 현장실습 도중 채용 (채용형태불문)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 바람.
- 바.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 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.
- 사.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 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됨. (복수전공, 부전공 인정 불가)

### 11. 실습 기관 인정기준

구 분	내 용
실습기관 모집(섭외) 방법	○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○ 학과(교수)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
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	○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,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. 단,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(연구소, 센터, 행정기관 등)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 12. 평가 및 학점인정

가. 평가는 실습생의 출근상황부, 주간활동보고서, 종합보고서, 현장실습기관성적표, 실습지도보고서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

평가항목	점수	평가방법
출근상황부	10	결근 1회당 2점 감점
주간활동보고서	15	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
종합보고서	15	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
현장실습기관성적표	40	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
실습지도보고서	20	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
합계	100	Pass / Fail

나. 학점인정은 실습기간 및 신청 교과목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며, '일 반선택'의 교과구분으로 학점을 부여

## 13. 실습지원비

가. 표준현장실습학기제,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구분

구분	표준 현장실습학기제	자율 현장실습학기제
실습시간	실습기관의 정규근로일수(주 5일) 및 시수 동일하게 운영	주 5일 중 1일 6시간 이상 실습원칙 단, 무급으로 운영시 주 15시간 이내 2개월 이내로 교육 위주로 실시하여야 함
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	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 이하 ( 직무 중심 )	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이상 50 이하 ( 교육 중심 )
★실습비 지급 의무화★	교육시간 (10~25%이하)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 최소 75%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※ 2024년도 최저 임금 - 2,060,740원	교육시간(25~50%이하)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 (월 환산액 기준) 최소 50%이상 지급
보험가입 유무	★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★	
근로계약 체결	실습기관 필요에 따라 체결 가능 (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범위 안)	체결 불가

★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(무급)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.

1.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,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.
2.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,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.
3.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4.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, 학생의 활동(과정 및 결과물 포함)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,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.
5.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,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.
6.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(Job Shadowing)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,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. 이 경우,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,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.
7.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, 학교 및 학생 상호 간에 사전 동의 되어야 한다.
8.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.

## 2 현장실습 참가신청 안내

### TYPE 1 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

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- 1) 학과(교수)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실습기관 섭외 및 연계
- 2)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
- 3) 실습기관,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해당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 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
- 4) 실습지도교수 승인 →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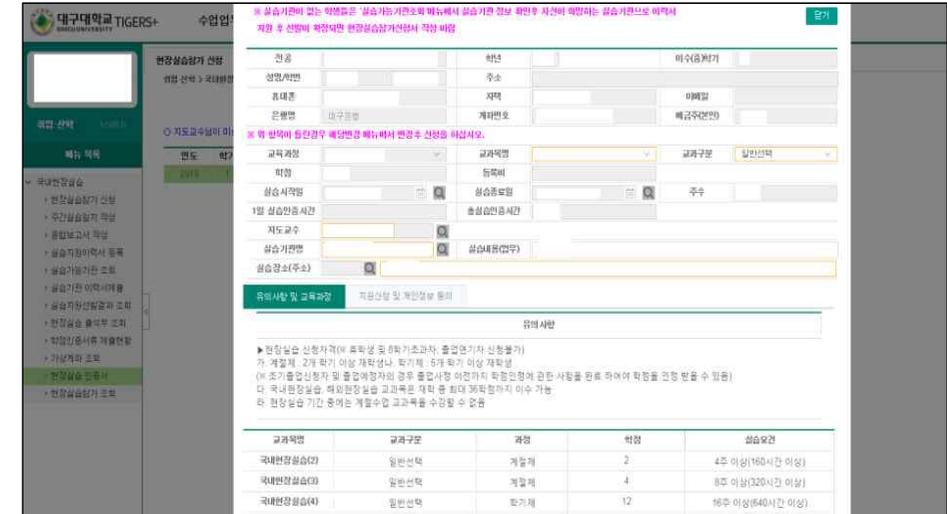
단,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개정 고시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바람.



- ① 학과 교수님과 상담한 후 실습기관을 추천받고 실습 참가 확정
- ②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



### ③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후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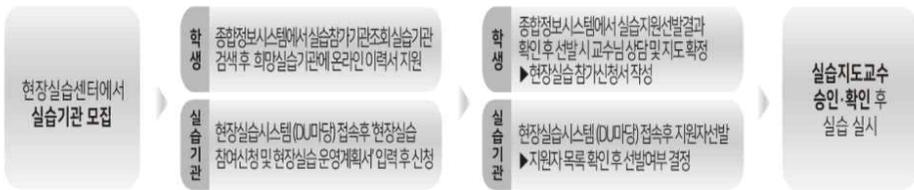


- 학생 개인정보사항은 학적시스템의 데이터이며 연락처, 계좌번호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 (학적, 등록/장학 등)에서 수정하여야 함
- 실습시작일과 종료일은 16주 또는 20주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저장이 되며 실습기간을 입력하면 교과목, 학점 등이 자동 입력됨
- 지도교수는 실습지도교수를 말하며, 현장실습을 지도하실 교수님을 '찾기' 메뉴를 통해 선택하고 해당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 (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한 교수님의 승인이 어려우면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재지정 하여야 함)
- 위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'신청' 버튼 클릭

**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**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·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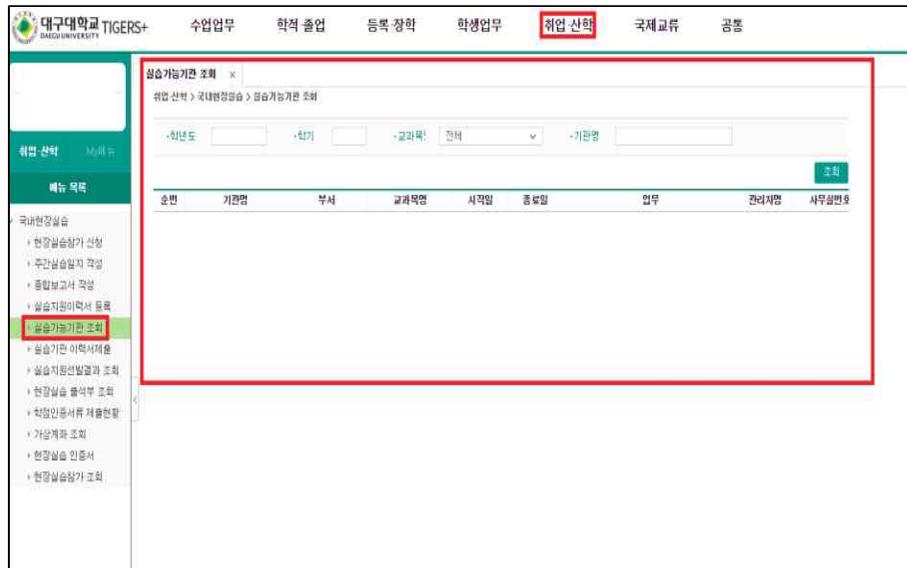
- 1)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
- 2)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
- 3)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
- 4)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(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)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
- 5)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→ 실습지도교수 승인 →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
- 6) 실습가능한 기관이 조회되지 않을 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올인케어 역량개발프로그램 확인 후 이력서, 자기소개서/ 지원서 작성



①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'조회' 버튼 클릭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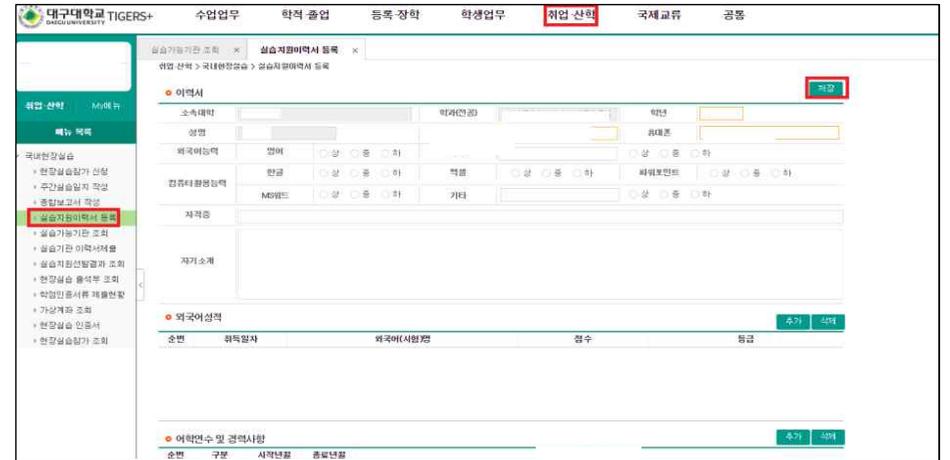
<실습가능기관 계획서 '보기' 클릭 시 아래내용 (실습정보) 확인>

\* 실습기관이 조회가 안될 시 현장실습지원센터(850-5618, 850-5614) 로 연락 바랍니다.



② 실습가능기관 조회 후 실습지원을 위한 이력서 등록

\* 이력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실습기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음



③ 이력서 등록 후 '실습지원' 메뉴에서 실습지원 클릭

- 실습기관 '찾기' 클릭 후 실습기관 선택



- 실습지원 후 선발 대기 상태 : 이력서 '접수'로 표기됨

- 실습지원 후 해당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확정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 '선발'을 확인 및 실습지도교수와 상담 후 '신청서'를 클릭하여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만 정상 신청됨을 유의바람.

\* 유의사항

- 실습지원 상태 '접수' 및 '선발'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중복지원 불가

- 실습지원 상태 '탈락' 및 '신청취소'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지원가능(단,신청취소는 실습지원상태가 "접수"일 경우만 가능하며 현장실습센터에 별도로 요청 하여야 함.)

-선발 확정 후 '현장실습 참가신청서'를 작성하여 '신청' 버튼 클릭

**공통사항    학과(교수) 연계형 /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**

가.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

①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'현장실습신청서관리' 메뉴에서 신청상태 확인 가능

- 학생이 신청서 작성 시 : 상태가 '접수'로 표시됨



- 실습지도교수님이 '승인' 처리 시 : 상태가 '대기'로 표시됨



-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최종 실습 '확인' 처리 시 : 상태가 '통과'로 표시됨



※ 상태가 '통과'로 확인되면 신청에 관한 모든 과정이 종료됨

나. 실습일지(주간실습일지, 종합보고서)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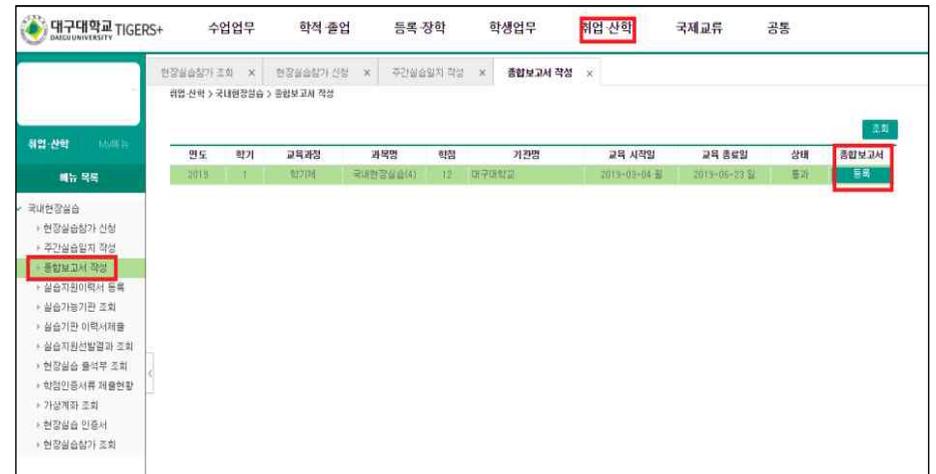
① 실습시작 후 '주간실습일지' 작성

-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
- 실습이 종료되는 마지막날까지 입력 완료하여야 학점 지급 가능함.
-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.



② 실습 종료 후 '종합보고서' 작성

-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
-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.  
(단, 실습 기관 소개 및 건의 사항 글자 제한 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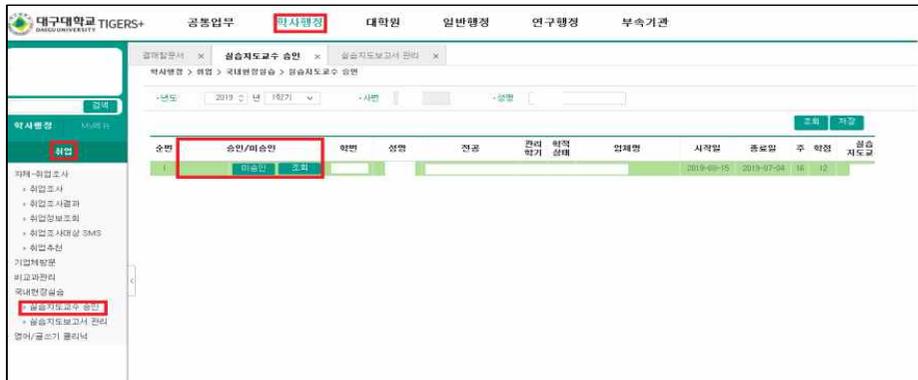
### 3 실습지도교수

#### - 현장실습 참가신청학생의 실습지도교수 승인

학생이 현장실습 참가신청 시 실습지도교수 승인을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교원시스템에서 승인/미승인 처리

※ TIGERS+(교원) → 학사행정 → 취업(or 역량) → 국내현장실습 → 실습지도교수 승인

※ 조회 클릭하시면 학생 정보 조회 가능



※ 해당 학생 행을 클릭하면 실습참가신청서 내용 조회 가능

#### - 현장실습지도

가.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, 우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실습상황 점검

나.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, 출근 상황, 실습일지 작성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의 실습상황을 평가하여 교원시스템의 '실습지도보고서' 작성(실습지도교수 참여 실적은 교원 봉사업적에 반영)

다. 현장실습지도를 위한 실습기관 방문 시 교직원 기업체방문을 신청할 수 있음

- 1) 메뉴 : TIGERS WEB+(교원시스템) 접속 - 학사 - 취업(or 역량) - 국내현장실습 - 실습지도보고서
- 2) 지도기간 : 학생 개인별 현장실습 기간
- 3) 우측의 '실습지도보고서' 및 '학생정보'의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입력 및 학생평가 후 각각 저장





[별지 제2호 서식]

■ 붙임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

운영과정	▪방학과정 [ ] ▪학기과정 [ ] ▪방학/학기 연계과정 [ ]
운영유형	▪직무체험형 [ ] ▪채용연계형 [ ]
실습기간	20년 월 일 ~ 20년 월 일
정규실습 시간	오전 시 분 ~ 오후 시 분 (▶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)
실습요일	월 [ ] 화 [ ] 수 [ ] 목 [ ] 금 [ ] 토 [ ] 일 [ ]
연장실습 여부	▪연장실습 없음 [ ] ▪상황별실시 [ ] ▪주기적/상시적실시 [ ]
산재보험 가입	▪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(법적 의무가입 / 미가입시 운영 불가)
기타사항	▪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[ ] / N [ ] *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

실습지원비	정규실습시간	▪지급기준:[월/주 기준 중 선택]▶ [ ] 기준 / [ ]원
	연장실습시간	▪지급기준:[시간 기준] / [ ]원 (*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)
	지급예정일	당월 [ ] 일 (*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)
기타 지원 사항	식사 [ ] 교통 [ ] 기숙사 [ ] ◀현물지원 사항	

현장교육 담당자	부서명		성명		직위	
	연락처		휴대폰			
	이메일					

실습 직무	부서명	
	주소	'실습기관 기본 정보' 상의 주소(위치)와 다른 경우 작성
	직무명	
	교육 목표	*Co-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*
	직무개요	*무엇을, 왜(목적, 이유), 어떻게(방법) 어디까지(범위)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*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*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, 단순·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*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*검토하여야 함
운영 / 지도 계획	*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/지도계획 기술 * * * * * * *	

학생 요건	전공 (인원)	OO학과 1명, OOO학과 1명 또는 OOO학과/OOO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
	요구 역량	Co-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, 외국어 역량, 지식/기술역량,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

[붙임3]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(학기제 전공선택 신청 학생용)

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

소 속	대학	학과(전공)	학년(학기)	
성 명		학 번		
실습기관		실습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16주( ) 20주( )	
학점인정학기	학년도	학기	인정과목	국내현장실습(일반선택) 3학점 전공현장실습(전공선택) ( )학점

실습내용	인정사유(의견)

위와 같이 국내현장실습에 대한 전공학점인정 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학부(과) 전공주임교수 : (인)

소속교수(\*실습지도교수 날인 필수)

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.(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)

인	인	인	인	인
인	인	인	인	인
인	인	인	인	인
인	인	인	인	인

※ 소속교원(정년트랙 전임교원) 2/3 이상이 날인하여 제출하여야만 학점 인정

※ 현장실습내용 증빙서류(기관운영계획서) 필수 첨부

※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됨.

(복수전공,부전공 인정불가)

대구대학교 총장 귀하